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,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되고,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공소청법」과 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10. 2.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, 2026. 3. 24. 공포, 10. 2. 시행)됨에 따라,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입법예고(2026. 10. 00. ~ 1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

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·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.

①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(국문)	
②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(영문)	
③ 정부기능 분류체계(BRM)	
④ 보유 근거(법령)	
⑤ 키워드(3개)	
⑥ 공공데이터 설명	
⑦ 제공대상 여부	제공 [] 부분제공 []
	미제공 [] 미제공 사유: () 미제공 근거 법률: ()
⑧ 향후 제공	향후 제공 [] 향후 제공 연도: () 향후 제공 사유: ()
⑨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	예 [] 아니오 []

작성 방법

1. “②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(영문)” 항목은 영문명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2. “③ 정부기능 분류체계(BRM)” 항목은 정부기능 분류체계(BRM)의 정책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3. “⑧ 향후 제공” 항목은 즉시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, 향후 제공 연도와 그 사유를 적습니다.